[별지 제1호서식] (규칙 제2조제2항 관련) 〈개정 2022. 1. 26.〉

인 구 수 등 통 보 서

(년 월 일 현재)

1. 인구수 등

읍·면·동명	투표구명	인 구 수	세대수	18세 이상의 주 민 수	비고

- 주: 1. 하나의 구·시·군안에 2이상의 읍·면·동으로 된 선거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"읍·면·동명"란 앞에 "선거구명"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"소계"란을 둔다. 이 경우 시·도의원선거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"읍·면·동명"란 앞에 시·도의원선거구,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 순으로 "선거구명"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각각 "소계"란을 둔다.
 - 2. 하나의 읍·면·동안에 2개의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가 있거나 2이상의 투표구가 있는 때에는 읍·면·동명별 또는 선거구별로 "소계"란을 둔다.
 - 3. "인구수·세대수·18세 이상의 주민수"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(,)로 구분한다.

2. 읍·면·동 현황

기준일 현재 읍·면·동명	'18.6.12. 현재 읍·면·동명	변 동 사 유	비고

- 주 : 1. '18.6.12. 후 여러 번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기준일 현재 읍·면·동에 따라 현황을 작성한다.
 - 2. "변동사유"란에는 "명칭변경", "읍·면·동 분할", "읍·면·동 합병", "읍·면·동 신설", "읍·면·동 폐지", "구·시·군 관할구역 변경" 등으로 기재한다.
 - 3.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"기준일 현재 읍·면·동명"란 앞에 "선거구명"란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읍·면·동 현황을 작성한다.
 - 4.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"기준일 현재 읍·면·동명 "란 앞에 국회의원선거구, 시·도의원선거구,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 순으로 "선거구명"란을 마련하고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별로 읍·면·동 현황을 작성한다. 다만 읍·면·동의 일부가 서로 다른 지방의원선 거구에 속하거나 하나의 읍·면·동이 2 이상의 선거구를 이루어 선거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작성하지 않고 기준일 현재 읍·면·동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 - 5. 4. 외의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"기준일 현재 읍·면·동명"란 앞에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순으로 "선거구명"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읍·면·동 현황을 작성한다. 다만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의 선거구명만 기재하되, 하나의 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,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순으로 "선거구명"란을 마련한다.